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1. 공제세액계산				
④구 분		⑤계산내역		⑥공제대상세액
합 계				
2. 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⑦구 분				합 계
⑧과세기간				
당기공제 대상세액	⑨당기분			
	⑩이월분 (=⑪~⑳의 합계)			
	⑪ 1차년도			
	⑫ 2차년도			
	⑬ 3차년도			
	⑭ 4차년도			
	⑮ 5차년도			
	⑯ 6차년도			
	⑰ 7차년도			
	⑱ 8차년도			
	⑲ 9차년도			
⑳ 10차년도				
⑳공제되지 않은 세액				
㉑공제세액 (=⑨+⑩-㉑)				
㉒소멸된 공제세액				
㉓이월액 (=㉑-㉒)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에 따른 세액공제([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 ④·⑦구분란: 아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 분	관련조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수탁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 제2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25조의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청년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통합 승계공제	제31조 제6항
법인전환 승계공제	제32조 제4항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3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제1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3 제2항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 제8항

- ⑥공제대상세액란: 세액공제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산기준을 참고하여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한도를 적용받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공제율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 ⑧과세기간란: 세액공제가 발생한 과세기간을 적습니다. 이월되는 공제의 과세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⑨당기분란: ⑥공제대상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⑩이월분란: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습니다.
- ⑪~⑳란: ⑩이월분이 각각 해당되는 연도에 적습니다.
- ㉑공제되지 않은 세액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69호서식)의 ⑦조정감란의 ㉑세액공제 금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따른 순서에 따라 최저한세적용 미공제액의 각 란을 조정하여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에 따른 세액공제([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⑨당기분과 ⑩이월분의 합계액 중 세액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